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2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서삼석 · 윤준병 · 박용갑
이성윤 · 신정훈 · 이병진
전종덕 · 김영진 · 문금주
위성곤 · 소병훈 · 황운하
허영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안에 그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주민등의”를 “지방의회·주민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을 “설명회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주민등의”를 “지방의회 및 주민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방의회 및 주민등의”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실시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생략)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3. (생략) <u><신설></u>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열람 및 지방의회·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설명회</u> 를----- ----- ----- ----- ----- ----- -----. ---. <u><삭제></u> 2. 3. (현행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u>주민등의</u> 의견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시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u>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u> ④ -----제2항 및 제3 항에-----<u>지방의회 및</u> <u>주민등의</u>-----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지 <u>방의회 및 주민등의</u>----- ----- ----- --.
---	--